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28
나. 회부일자 : 2000. 11. 29
다. 상정·의결일자 : 2000. 12. 27

고성군수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신설된 7급까지의 국가보훈처의 지방세 면제확대 요청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적용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6급에서 1-7급으로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나.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폐지로 지역보증재단법 적용
(안 제21조)

4. 검토의견

- 2000년 12월 31일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이등급을 당초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였고
○ 경상남도 세정 13400-10476(2000. 4. 8)호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 되었음.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는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고, LPG 연료이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다소의 지방세가 감소되더라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기존의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경남신용보증조합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 되었기에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상이 등급 7급까지 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 답 : 감면대상자는 26명으로서 년간 358만원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정함.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12.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